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8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19. 02. 28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2조제6호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‘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’ 대상 중 “도시재생활성화지역”과 “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”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안 제6조제2항으로 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2조제6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대상을 안 제6조제2항으로 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함
-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함(안 제6조제1항).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구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”을 “구역을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.

안 제6조 부분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가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

나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(이하 “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”이라 한다)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구역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“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”이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.</p> <p>가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</p> <p>나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--- <u>구역을</u>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삭 제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삭 제></p>

(이하 “관리형 주거
환경개선사업”이라
한다)으로 「도시 및
주거환경정비법」
제16조에 따라 지
정·고시된 구역

〈신 설〉

제6조(주택성능개선지원
구역 지정) 시장은 사용
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
층주택이 60%이상으로
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
는 구역을 「도시재생
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
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
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
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
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
다.

1. 관리형 주거환경개
선사업이 예정된 구역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
정비법」 제20조 및
제21조에 따라 해제

제6조(주택성능개선지원
구역 지정) ① -----

--.

1. ~ 5. (개정안과 같
음)

된 정비구역
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

4. 시장이 골목길재생지역 등 집수리활성화를 위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

5.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구역

〈신 설〉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1. 「도시재생 활성화

화 및 지원에 관한
특별법」 제20조
및 같은법 시행령
제28조에 따라 고
시된 도시재생활성
화지역

2. 「도시 및 주거환
경정비법」 제23조
제1항제1호에 따른
방법으로 시행하는
주거환경개선사업
(이하 “관리형 주거
환경개선사업”이라
한다)으로 같은 법
제16조에 따라 지
정·고시된 구역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”이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,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조(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) ① 시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

된 저층주택이 60%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「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된 구역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 구역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
4. 시장이 골목길재생지역 등 집수리활성화를 위해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
5.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구역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도시 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1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(이하 “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”이라 한다)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구역

제7조(중전 제6조)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집수리 지원사업)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시장은 다음 각

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외 지역에서의 재정적 지원은 용자에 한한다.

제9조(종전 제8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공사비용 지원 비율)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, 용자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11조(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시장은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</u> (이하 “시”라 한다)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집수리를 활성화하고, 관련 집수리업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5. (생략) 〈신 설〉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“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”이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</u></p>
<p>제4조(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<u>서울특별시</u>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 〈신 설〉</p>	<p>제4조(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) ① <u>시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%이상으로서 다음 각</u></p>

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된 구역
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
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

4. 시장이 골목길재생지역 등 집수리활성화를 위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

5.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구역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

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1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
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(이하 “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”이라 한다)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구역

제6조(집수리 지원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제7조(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)

제8조(공사비용 지원) 시장은 저층

제7조(집수리 지원사업)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외 지역에서의 재정적 지원은 용자에 한한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)

제9조(공사비용 지원 비율) ① 시

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공사비용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용자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)
〈신 설〉

제10조(우수 집수리업체 지원)
제11조(재원)
제1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

장은 제7조에 따라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, 용자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)
제11조(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시장은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우수 집수리업체 지원)
제13조(재원)
제1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